

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[2021. 5. 7]

조례 제3731호

일부개정 2025. 5. 13 조례 제4048호
(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
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(이하 “민간단체”라 한다)란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 중 연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민간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기본방향) 연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) ① 군수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복지 활동 및 소외된 이웃 지원 사업
2.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
3.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4.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내 생태·환경보전 및 홍보 활동 사업
5.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홍보 및 지질관광 홍보 활동 사업
6.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, 교육, 토론회, 견학 및 국내·외 연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
7. 군 선양 및 지역사랑 등 군민화합과 공동체 정신 회복 사업
8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

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지원의 내용, 대상, 범위,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.

제5조(보조금의 신청 등)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민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목적과 내용
2.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
3.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
4. 기대효과
5. 사업비 집행계획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제6조(포상) 군수는 연천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「연천군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5. 13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5. 5. 13 조례 제4048호,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(제4조 관련)

지원구분	지원 내용	지원 대상	세부 지원 범위	지원 절차 및 방법
제4조제4항제5항제6항 관련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, 도 차원의 군 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, 행사 및 사업 2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, 행사 및 사업 3. 국정, 도정 및 군정방침과 각 연도별 군의 주요업무 실현, 역점시책 추진에 기여하는 시책, 행사 및 사업 4. 교육 및 토론회 5. 군 홍보를 위한 전국행사 참여 및 견학 	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책, 행사와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의 보조 2. 시책, 행사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소속 원에 대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준하는 실비보상 3. 시책, 행사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차량 지원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조금 지원은 다음과 같이 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보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 검토, 확정 후 보조금 지원 2. 필요한 경우의 실비보상은 다음과 같이 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별 실비보상액을 산정, 지원 확정 후 개별계좌로 지급 3. 차량지원은 다음과 같이 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량운행이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, 확정 후 군의 차량 지원